

유류구매카드 사용 안내

○ 인천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및 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합원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대상 : 주유형태가 특이한 차량
가. 월 지역평균거래량 2배 초과 충전 차량
나. 인천 및 인근지역 이외 지방충전 차량{영업일 포함}
다. 일 120리터 이상 상습충전
라. 영업목적 외 개인사유로 차량가스충전(주유)

○ 영업 목적이 아닌 개인사유{시골방문, 여행, 별초, 병문안 등}로 차량 충전(주유)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지방 영업(승객탑승)으로 인한 운행 시 반드시 미터기 작동해야 합니다.
- 승객과 요금을 협의하여 운행 할 경우 미터기 미사용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대상입니다.

○ 행정처분

- 보조금 지급정지와 함께 부정 수급된 유가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 됨

위반 횟수	처분 내용
1차	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
2차	1년 보조금 지급정지